

울산지방법원 2021. 10. 1 선고 2020가단680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

담당변호사 이정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열

변 론 종 결 2021. 7. 9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. 1. 2. 접수 제911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2014. 12. 26.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관계에 있다가, 원고 및 피고가 상호 제기한 울산가정법원 2020드단24397(본소), 2020드단27884(반소) 이혼 등 사건에서 2021. 2. 2.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1. 2. 23.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2019. 12. 20.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(갑 제3호증. 이하 ‘이 사건 각서’라 한다)를 작성하였다.

위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부부의 인연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서로 협의하였으며 이혼 후에 어떠한 민,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. 이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.

다. 원고는 2020. 1. 2.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911호로 2020. 1. 2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9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다.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울산가정법원에 제출하였는데, 피고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, 결국 소송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하였다.

이와 같이,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부담부 증여인데,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 단

살피건대, 앞서 본 갑 제3호증(이 사건 각서)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,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

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태홍

별지목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울산광역시 울주군

아파트

동

[도로명주소] 울산광역시 울주군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조 및 면적 : 철근콘크리트구조

124.3777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울산광역시 울주군

대 34255㎡

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: 1.소유권

34255분의 66.7463

